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추가 희망자 확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‘공동등록 협의체 운영·관리 절차’에 따라 ‘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’은 협의체 대표자를 선정하기 전에 협의체별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**대표자 희망자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** 중에 있습니다.

협의체에 가입한 회원 중 공동등록 협의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협의체 회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오니, **대표자를 희망하는 협의체 회원은 2015. 12. 4까지 대표자 신청여부를 메일로 회신**하여 주시고 **공동등록협의체 시스템에서 협의체 가입정보(참여형태)를 대표자로 변경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간 내 추가 희망자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추가로 대표자를 희망하는 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등록협의체 대표자 선정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▶ **향후 진행일정**

- **대표자 선정 : 2015. 12. 5. ~ 12. 14.**
- **대표자 선정 시스템 등록 및 공식화 : 2015.12.15.**
- **대표자 선정 후 공동등록지원시스템*을 활용하여 협의체 활동**

* **공동등록지원시스템**(http://www.chemnavi.or.kr) : 협의체 내 회원의 정보교류 및 협의체 활동을 위한 창구(커뮤니티)(상세 매뉴얼은 추후 공지)

※ 문의사항 ☎ 02-6050-1311~1315<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>